

# 2020년도 제25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10. 20.(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권현영(분과위원장), 박성호, 박정인,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24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모바일 앱 불법성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655건(안전번호 제2020-134462호~135779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0-134462호~134478호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중으로 각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여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모두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134479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의 제품사진 및 설명 부분에 저작물성의 인정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정당한 저작권자임을 입증하는 자료의 제시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법상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시정권고를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3,637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모바일 앱 불법성 심의
  - 주요내용: 저작권을 침해하는 '구글 플레이' 게시 '앱'에 대해 '구글 플레이' 내 삭제 협조 요청 여부(안전번호 제2020-1호)
  - 회의결과: 심의 대상 '앱'은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 게시물을 대량으로 게시하여 합법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구글 플레이' 내 삭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25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0-24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전차 회의록 5쪽에 민원인이 신고한 사이트명과 영화명, 6쪽에 저작물명, 7쪽에 게임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참고로 비식별 처리해야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미리 회의록에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B 위원, C 위원, D 위원: 이견 없으며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영화명, 저작물명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위너브러더스', '넷플릭스', 'tvN', '일본 Tokyo MX', '소니 픽처스', '유니버설픽처스', 'Adobe Systems Inc.', 'Autodesk Inc.', 'Microsoft Corp.', '(주)한글과 컴퓨터'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D 위원, A 위원, B 위원, C 위원: 해당 없음.

- 권현영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5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3,655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4462호~134478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한 사안임.

국내 서점 및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만화 저작물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복제·전송하고 있음. 일부 안건을 설명하겠습니다.

(안건번호 제2020-134463호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만화 '□□□□□□ □□□□'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40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으며 정식 출판된 책을 스캔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출간된 만화를 스캔해서 번역한 것임. 화면 중간에 '▲▲▲▲' 마크를 확인할 수 있음.

(안전번호 제2020-134464호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만화 '●●●●● ●●●●● ●●●●●'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30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음. 해당 심의대상 게시물도 일본에서 출판된 것을 스캔하여 번역한 것으로 추정됨.

(안전번호 제2020-134467호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만화 '○○○○○ ○○○'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30포인트에 구매할 수 있으며 ■■ ■■ ■■ ■■ ■■ 마크가 확인됨.

(안전번호 제2020-134472호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만화 '◆◆◆ ◆◆◆◆'를 압축파일로 게시하여 40포인트에 웹하드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음.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만화를 스캔해서 번역한 것으로 보임.

(안전번호 제2020-134476호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만화 '☆☆☆ ☆☆☆'를 95화까지 압축파일로 80포인트에 웹하드 사이트에서 제공중임. '▽ ▽▽', '♣♣♣'이라고 되어 있어서 불법복제하여 번역해서 판매중인 것으로 추정됨.

심의대상 게시물 17건은 모두 국내 서점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식으로 번역되어 출판된 만화 저작물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현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34462호, 13447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B 위원: 서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저작물을 불법복제하여 전송한 것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D 위원, A 위원: 이견 없으며, 시정권고를 가결하는데 동의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34462호~13447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34479호는 민원인이 '■■■■ ■■■■'를 국내에서 공식 판매하는 회사임. 스마트스토어에 '■■■■ ■■■■'를 병행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민원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 설명 및 픽토그램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병행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민원인의 회사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함.  
민원인이 신고하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2020년 8월 3일 등록한 '♡♡♡ ♡♡ ♡♡♡♡ ♡♡♡♡'의 저작권 등록증, 픽토그램 등을 제출하였음.  
병행수입업체인 '♠♠♠♠'에 본 전문위원이 직접 통화해서 확인해본 결과 제품을 직접 촬영해서 편집한 이미지를 제품 상세페이지에 사용했다고 주장함. 콘셉트는 비슷했지만 민원인의 상세페이지와 완벽

하게 일치하는 이미지는 확인하기 어려웠음. 한편 민원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는 2020년 모델의 ▶▶▶를 판매하고 있고 병행수입업체는 2019년 모델의 ▶▶▶를 판매하고 있음.

제품 사진에 대한 저작물성 인정 여부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현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3447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D 위원: 민원인이 제작한 이미지를 병행수입업체가 게시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확인하지 못했음.
- B 위원: ◆◆ 이미지의 저작권자가 민원인이 맞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제출서류 중 저작권등록증에 따르면 그러함.
- D 위원: 저작권을 등록한다고 신청하면 등록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저작권 등록이 되는 것이므로 민원인이 등록한 ‘◆◆’ 픽토그램에 대해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임.

- 오진해 전문위원: 병행수입업체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 픽토그램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한 것으로 보임.
- D 위원: 민원인이 등록한 이미지를 복제해서 이용했어도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어서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임.
- 오진해 전문위원: 본 전문위원과의 통화에서 병행수입업체는 상세페이지에서 확인되는 픽토그램을 삭제하겠다고 밝혔음.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 ‘◆◆’ 픽토그램은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D 위원: 시정권고 제도는 영화, 음악 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이 오전에 게시되면 오후에 수천, 수만 건의 복제·전송으로 저작권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임.  
불법복제물의 피해확산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다투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함.
- A 위원: 저작물성의 인정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정당한 저작권자임을 입증하는 자료의 제시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법상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D 위원: 시정권고 제도는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으로 금번 심의 안건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시정권고를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B 위원: 이견 없으며 부결 의견에 동의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3447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34480호~135779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 게임, 만화, 어문,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그중 일부 안전을 설명하겠음.
  - (음악 '눈의 꽃'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눈의 꽃' 음원을 포함하여 219개 음원을 압축하여 웹하드 사이트에서 380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음.
  - (방송 '신박한 정리'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신박한 정리'는 집의 물건을 저이해주면서 팁을 알려주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tvN에서 20. 6. 29.부터 현재까지 방영중이며 웹하드 사이트에서 신박한 정리 6회'를 49포인트에 판매중임. 6회는 2020. 8. 3. 방송되었음.
  - (영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2019. 7. 2. 개봉한 미국 액션, 모험, 코미디, SF 영화로 모바일 웹하드에서 430포인트에 판매중이며 한글 자막을 함께 제공하고 있음.
  - (어문 '재벌 말고 사람 되렵니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웹하드 사이트에서 30포인트에 '재벌 말고 사람 되렵니다' 완결된 소설을 압축하여 판매하고 있음. ebook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캡처한 것으로 추정됨. 웹소설 창작 사이트인 '조아라'에서 1회~36회는 무료로 37회~224회까지는 1회당 100원에 판매중임.

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안전 목록 및 증거자료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헌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심의안전 목록과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0-134480호~13577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C 위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B 위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A 위원, D 위원: 이견 없으며, 가결 의견에 동의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34480호~135779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0-134479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0-134462

호~134478호, 134480호~135779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모바일 앱 불법성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1쪽부터 15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 4. 폐회 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25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25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0. 27.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박성호

위원 박정인

위원 홍지만